

의안번호	2217480
의 퇴 인	황희의원
회 답 일	2026.6.12.
추계번호	26D0370

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주거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 (실태조사)	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7조 (군인 주택 건설 및 공 급)	국가는 군부대 주둔지 등 군인의 근무지 인근에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군인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음(제1항) 군인 주택은 군인의 복무 기간,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(제2항) 군인 주택 건설·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4	안 제10조 (군인 주택의 운영 및 관 리)	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건설된 군인 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산정 기준, 입주 및 퇴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(제1항) 군인 주택의 임대료는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수준 및 군인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,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5	안 제11조 (주택 구입· 임차 자금 지 원)	국가는 군인 및 그 가족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·저리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주택 구입·임차 자금 지원의 대상, 한도, 이율 및 상환 조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12조 (장기복무 제 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)	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3조 (군 주거 통 합정보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)	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주거 실태 조사 및 군인 주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8	안 제14조 (군 주거 안 정 기금의 설 치 및 운용)	국가는 군인 주거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 주거 안정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음(제1항) 기금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, 군인 주거지원사업 관련 수입금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함(제2항)	재량규정
9	안 제15조 (국가 지원)	국가는 군인 주거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5조 (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• 미대상 － 개정안에 따라 「군 주거지원 기본계획」을 수립할 경우, 국방부가 직접 수립할 계획으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음
2	안 제6조 (실태조사)	• 미대상 － 현재 「군인복지기본법」에 의거한 「군인복지 기본계획」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없음
3	안 제7조 (군인 주택 건설 및 공급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10조 (군인 주택의 운영 및 관리)	• 미대상 －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「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」에 주거지원 보증금 징수 및 입주퇴거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－ 군인에 대해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, 주거지원보증금만을 징수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없음
5	안 제11조 (주택 구입·임차 자금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6	안 제12조 (장기복무 세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7	안 제13조 (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	• 미대상 － 현재 입주신청·배정·퇴거 및 주거시설 점검·관리 등 통합 지원을 위한 주거 시스템을 포함한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 중으로 법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음 － 참고로,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, 사업기간은 2025~2027년이며, 총사업비는 346억원임
8	안 제14조 (군 주거 안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현행 군 주거지원은 건립, 매입 등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시설 지원과 전세자금 이자 지원, 주택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
- (주거시설 지원) 근무지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관사 지원, 미혼 간부 및 기혼 별거 간부에게는 간부숙소를 지원하거나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
 - (전세자금 이자 지원) 주택 구입·임차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, 현재 국방부는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 임차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
 - 군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주택 임차자금 대부를 받고, 발생하는 이자는 국방부에서 금융기관으로 직접 정산(지원단가: 급지별 1.2~3.6억원)
 - (주택수당 지원) 다른 군 주거지원 (관사, 간부숙소, 전세자금 이자)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 주택수당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 지원

[표 1] 군 주거지원 현황

(단위: 명, %)

합계	부양가족 있음				부양가족 없음		
	계	관사	전세지원	주택수당	계	간부숙소	주택수당
186,570	82,945	58,159	4,041	20,745	103,625	85,275	18,350
(100.0)	(44.5)	(31.2)	(2.2)	(11.1)	(55.5)	(45.7)	(9.8)

자료: 국방부

- 2026년 기준 국방부는 관사 및 간부숙소의 건립 및 개선에 7,607억 2,800만원, 전세자금 이자지원에 529억 5,600만원, 주택수당에 699억 9,700만원 등 8,836억 8,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2] 군 주거지원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2	2023	2024	2025	2026
관사 및 간부숙소	451,364	478,535	525,977	786,292	760,728
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	52,900	47,610	52,107	67,055	52,956
주택수당	25,383	52,919	67,311	67,311	69,997
합계	529,647	579,064	645,395	920,658	883,681

자료: 국방부

- 제정안은 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 실태조사 실시, 군인주거주택의 적정 임대료 징수, 주택 구입·임차자금 지원,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,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, 군 주거 안정기금의 설치·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, 제정안에 따라 군 주거 지원을 확대할 경우 군인 주거 자금 지원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, 구체적인 계획 미비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- 국방부는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, 군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할 계획이며 「군인복지 기본계획」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주거실태 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
 - 국방부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관사 지원, 미혼 간부 및 기혼 별거 간부에게는 간부숙소를 지원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군인 주택 건설 및 공급이 확대될 경우, 추가재정소요 가능성이 있으나, 군인 주택 건설·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
 - 주택구입·임차에 대한 자금 지원·확대(안 제11조)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자금지원의 대상, 한도, 이율 및 상환조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
 - － 참고로, 전세자금 이차지원 관련 군간부 전세자금 이차지원 예산으로 529억 5,600만원(2026년 기준)이 편성되어 있음
 -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(안 제12조)과 관련하여, 국가보훈부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근거,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대부사업을 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대부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
 - － 참고로, 제대군인대부(융자) 사업의 예산은 16억 1,900만원(2026년 기준)이 편성되어 있음

- 군 주거 안정기금의 설치·운영(안 제14조)과 관련하여, 국방부는 현재 군 인복지기금 내 주거지원계정을 운용하고 있음. 제정안에 따라 군 주거 안정 기금을 설치·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, 구체적인 계획 부재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